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립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규정은 국립대학별 명칭, 시설 설치 가능한 지역, 학내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과 직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규정과 국립대학의 운영 상황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국립대학의 운영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그 간의 현장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립대학의 운영상 제약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학별 교명 변경(안 제23조 신설, 별표1 개정)

그 간 교명 앞에 국립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의 추가를 신청한 대학이 많았음에도 교명 변경 허용이 지연되고 있었음. 이에 따라 교명 변경을 신청한 13개 대학의 교명을 일괄 변경하는 한편, 각 대학이 대학의 상징물, 관인, 문서 등에 국립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시설 설치 가능 위치 유연화(안 제7조, 별표1 개정)

현재는 각 대학별 소재지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대학이 소재지 외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부속시설을 소재지 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 분명하게 정하고 있지 않아 대학이 실습시설 확보 등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경우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령에 각 대학별 주된 위치를 정하되 각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된 위치 외의 지역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속시설의 설치 가능 위치에 대한 제한을 명시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다. 주요 보직별 직렬 제한 완화(안 제9조, 제13조)

현재는 학내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과 직렬을 나열하면서, 일부 직렬은 누락하고 있어 각 대학의 인사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각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원의 직렬 제한은 폐지하고자 함.

라. 통·폐합 관련 규정 보완(안 제24조 신설)

최근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국립대학 간 통·폐합 논의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국립대학의 통·폐합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립대학 통·폐합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부고시에 위임하고자 함.

마. 현실과 맞지 않는 학비보조 규정 정비(안 제16조 내지 제19조)

현행 법령은 간호·해양·체육 등 특수목적학과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일부 보조하도록 정하면서,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졸업생,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 졸업생에게만 졸업 후 특정직무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미 폐지된 입학금이 일부 대학에만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현실과 괴리된 졸업생 복무의무를 폐지하고, 입학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바. 공주대학교부설특수학교 신설(안 별표5)

2024년 3월 1일에 최초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인 공주대학교부설 특수학교가 개교 예정임. 이에 따라 공주대학교의 부설학교에 ‘부설특수학교’를 추가하고 개교일인 2024년 3월 1일에 시행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31. ~ 5. 10.)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명칭·소재지”를 “명칭·주된 위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부속시설 등)”을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부속시설등의”를 “제2항에 따른”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부속시설”을 “연구시설·부속시설”로 한다.

①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본시설을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이하 “부속시설 등”이라 한다)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고, 특수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본시설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은 제3조에 따른 주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주된 위치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육·연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총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교육부장관이 동의한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주된 위치 밖 시설 설치의 타당성 심사를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을 받아 공동캠퍼스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한다.

④ 총장은 제2항에 따른 부속시설등에 장을 둘 수 있다. 이 때 부속시설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둔다.

1.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또는 학부의 장
2.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9조제1항 전단 중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행정본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사무국장, 행정본부장”으로,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를 “장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두되, 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두고 실장은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 사무국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

2. 행정본부장: 3급·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

3.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 교수 또는 부교수

④ 제3항에 따른 과 및 담당관에 다음 각 호의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과장 및 담당관으로 보한다.

1. 과장 및 담당관: 3급·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

2. 학생실습과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관: 3급·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3. 지원·연구시설과 부속시설등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

제13조제1항 중 “두되, 총무처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처·실·본부·단”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총무처장, 처·실·본부·단”으로,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를 “장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총무처장: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

2.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 교수 또는 부교수

제16조제2항 중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로,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및 국립목포해양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해양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를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국립목포해양대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상국립대학교·군산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부경대학교·전남대학교·제주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를 “경상국립대학교·국립군산대학교·국립목포해양대학교·국립부경대학교·전남대학교·제주대학교 및 국립한국해양대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명칭 사용의 특례) 학교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상징물, 관인, 문서 등에서 학교의 명칭에 국립학교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를 부기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대학 통·폐합)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 통·폐합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1의 제목 중 “소재지”를 “주된 위치”로 하고, 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학

학교명	주된 위치	학교명	주된 위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도	국립순천대학교	전라남도
강원대학교	강원도	국립안동대학교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경상국립대학교	경상남도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국립공주대학교	충청남도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국립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국립창원대학교	경상남도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경상북도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국립목포대학교	전라남도	충북대학교	충청북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전라남도	한경국립대학교	경기도
국립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경기도·충청북도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경상남도	한국체육대학교	서울특별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특별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국립한밭대학교	대전광역시

2. 교육대학

학교명	주된 위치	학교명	주된 위치
공주교육대학교	충청남도	전주교육대학교	전라북도
광주교육대학교	광주광역시	진주교육대학교	경상남도
대구교육대학교	대구광역시	청주교육대학교	충청북도
부산교육대학교	부산광역시	춘천교육대학교	강원도
서울교육대학교	서울특별시		
경인교육대학교	인천광역시·경기도		

5. 특수학교

학교명	주된 위치	과정
서울맹학교	서울특별시	유치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초등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학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고등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서울농학교	서울특별시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
한국경진학교	경기도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
한국선진학교	경기도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
한국우진학교	서울특별시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

별표5의 학교명 중 “강릉원주대학교”를 “국립강릉원주대학교”로, “공주대학교”를 “국립공주대학교”로 하고, 국립공주대학교의 부설학교명에 “부설특수학교”를 신설한다.

별표5의2를 종전의 별표5와 같이 신설하고, 학교명 중 “강릉원주대학교”

를 “국립강릉원주대학교”로, “공주대학교”를 “국립공주대학교”로 한다.
별표6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명	과 · 담당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10
강원대학교	15
경북대학교	15
경상국립대학교	14
국립공주대학교	11
국립군산대학교	10
국립금오공과대학교	3
국립목포대학교	9
국립목포해양대학교	1
국립부경대학교	11
부산대학교	1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9
국립순천대학교	10
국립안동대학교	10
전남대학교	16
전북대학교	11
제주대학교	11
국립창원대학교	10
충남대학교	12
충북대학교	11
한경국립대학교	7
국립한국교통대학교	10
한국체육대학교	2
국립한국해양대학교	10
국립한밭대학교	7

별표8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명	행정실	학교명	행정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5	국립순천대학교	4
강원대학교	12	국립안동대학교	4
경북대학교	12	전남대학교	13
경상국립대학교	12	전북대학교	10
국립공주대학교	7	제주대학교	8
국립군산대학교	4	국립창원대학교	5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충남대학교	10
국립목포대학교	4	충북대학교	8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2
국립부경대학교	6	국립한국교통대학교	5
부산대학교	12	한국체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국립한국해양대학교	4
		국립한밭대학교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학교 신설에 따른 특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학 및 교육대학에 두는 부설학교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5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칭 등) 교육부장관의 관 할 아래 두는 학교의 <u>명칭·소 재지</u>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명칭 등) ----- ----- <u>명칭·주 된 위치</u> -----.
제7조(부속시설 등) ①대학(교육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 · 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 른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 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 (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 을, 특수학교에 필요한 실습시 설을 둘 수 있다.	제7조(시설 등) ①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 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본 시설을 교육·연구활동에 적합 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 대학·대학원·학과 또는 학부 의 장 중에서 두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대학에 「대학설립·운영 규 정」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지원시설·연구시설·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이 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 필 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고, 특수 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지원 시설 및 연구시설은 제3조에 따 른 주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신 설>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주된 위치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육·연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총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교육부장관이 동의한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주된 위치 밖 시설 설치의 타당성 심사를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을 받아 공동캠퍼스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한다.

④ 총장은 제2항에 따른 부속시설등에 장을 둘 수 있다. 이 때 부속시설등의 장은 다음 각 호

③ 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④ 총장은 부속시설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① 대학에 사무국·행정본부(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경상국립대학교 및 전남대학교로 한정한다)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둔다.

1.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또는 학부의 장

2.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⑤ -----

-----.

⑥ -----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연구시설·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① -----

④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④ 제3항에 따른 과 및 담당관
에 다음 각 호의 직급에 해당하
는 사람을 과장 및 담당관으로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생실습과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관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둘 수 있고,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⑤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8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제13조(교육대학의 하부조직) ① 교육대학에 총무처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총무처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

보한다.

1. 과장 및 담당관: 3급·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

2. 학생실습과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관: 3급·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3. 지원·연구시설과 부속시설 등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

⑤-----
----- 두고
실장은 4급 또는 5급 일반직
공무원-----

-----.

제13조(교육대학의 하부조직) ①-----

----- 두고 다
음 각 호의 직급에 해당하는 사
람을 각각 총무처장, -----

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사서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처 · 실 · 본부 · 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② (생 략)

제16조(학비보조 등) ① (생 략)

②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③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은 재학중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

----- 장으로 보한다.

1. 총무처장: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

2. 처 · 실 · 본부 · 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 교수 또는 부교수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학비보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교육부장관-----

-----.

③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승선 생활관비·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 한국체육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④ 한국해양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중 우수해기사 또는 체육지도자 양성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서 퇴관시킬 수 있다.

⑤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학생은 재학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⑥ 승선실습 기간 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경상국립대학교·군산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부경대학교·전남대학교·제주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의

및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④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국립목포해양대학교 -----

-----.

⑤ 국립국해양대학교-----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⑥ -----

-국립군산대학교·국립목포해양대학교·국립부경대학교---
----- 국립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서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⑦ 한국교통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 학생은 재학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⑧ (생략)

⑨ 한경국립대학교의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⑩ · ⑪ 삭제

⑫ · ⑬ (생략)

제17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대학의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1항

한국해양대학교-----

⑦ 국립한국교통대학교-----

⑧ (현행과 같음)

⑨-----

----- 교육부

장관-----

⑫ · ⑬ (현행과 같음)

제17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
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제18조(복무의무) ①한국해양대학

<삭 제>

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
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졸업
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
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과 그 졸
업자로서 복무의무기간중 대학
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
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
고, 교육부장관은 그 승인을 얻
은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수
업연한 기간동안 복무의무를 유
예할 수 있다.

<삭 제>

③ 삭 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

<삭 제>

무기간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학비보조금의 상환) ①제1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무를 지는 자가 그 복무의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한 때

②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삭 제>

제23조(명칭 사용의 특례) 학교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상징물, 관인, 문서 등에서 학교의 명칭에 국립학교

<신 설>

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를 부
기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대학 통·폐합) 교육부장
관은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 통·폐합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

학교의 명칭 · 주된 위치 및 과정 (제3조 관련)

1. 대학

학교명	주된 위치	학교명	주된 위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도	국립순천대학교	전라남도
강원대학교	강원도	국립안동대학교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경상국립대학교	경상남도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국립공주대학교	충청남도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국립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국립창원대학교	경상남도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경상북도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국립목포대학교	전라남도	충북대학교	충청북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전라남도	한경국립대학교	경기도
국립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경기도·충청북도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경상남도	한국체육대학교	서울특별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특별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국립한밭대학교	대전광역시

2. 교육대학

학교명	주된 위치	학교명	주된 위치
공주교육대학교	충청남도	전주교육대학교	전라북도
광주교육대학교	광주광역시	진주교육대학교	경상남도
대구교육대학교	대구광역시	청주교육대학교	충청북도
부산교육대학교	부산광역시	춘천교육대학교	강원도
서울교육대학교	서울특별시		
경인교육대학교	인천광역시·경기도		

3. 삭제 <2022. 11. 8.>

4. 삭제 <2013. 3. 23.>

5. 특수학교

학교명	주된 위치	과정
서울맹학교	서울특별시	유치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초등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중학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고등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서울농 학교	서울특별시	유치부 · 초등부 · 중학교 · 고등부
한국경진 학교	경기도	유치부 · 초등부 · 중학교 · 고등부
한국선진 학교	경기도	유치부 · 초등부 · 중학교 · 고등부
한국우진 학교	서울특별시	유치부 · 초등부 · 중학교 · 고등부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5]

대학 및 교육대학에 두는 부설학교의 명칭 및 위치

(제8조제1항관련)

학 교 명	부 설 학 교 명	위 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부 설 유 치 원	강 원 도
강원대학교	부 설 고 등 학 교	강 원 도
경북대학교	부 설 초 등 학 교 부 설 중 학 교 부 설 고 등 학 교	대 구 광 역 시
경상국립대학교	부 설 중 학 교 부 설 고 등 학 교	경 상 남 도
국립공주대학교	부 설 유 치 원 부 설 중 학 교 부 설 고 등 학 교 부 설 특 수 학 교	충 청 남 도
부산대학교	부 설 고 등 학 교	부 산 광 역 시
전남대학교	부 설 중 학 교 부 설 고 등 학 교	광 주 광 역 시
전북대학교	부 설 고 등 학 교	전 라 북 도
제주대학교	부 설 초 등 학 교 부 설 중 학 교 부 설 고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충북대학교	부 설 중 학 교 부 설 고 등 학 교	충 청 북 도
공주교육대학교	부 설 초 등 학 교	충 청 남 도
광주교육대학교	광 주 부 설 초 등 학 교 목 포 부 설 초 등 학 교	광 주 광 역 시 전 라 남 도
대구교육대학교	대 구 부 설 초 등 학 교 안 동 부 설 초 등 학 교	대 구 광 역 시 경 상 북 도
부산교육대학교	부 설 초 등 학 교	부 산 광 역 시
서울교육대학교	부 설 초 등 학 교	서 울 특 별 시
경인교육대학교	부 설 초 등 학 교	인 천 광 역 시
전주교육대학교	전 주 부 설 초 등 학 교 군 산 부 설 초 등 학 교	전 라 북 도
진주교육대학교	부 설 초 등 학 교	경 상 남 도
청주교육대학교	부 설 초 등 학 교	충 청 북 도
춘천교육대학교	부 설 초 등 학 교	강 원 도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5의2]

대학 및 교육대학에 두는 부설학교의 명칭 및 위치

(제8조제1항관련)

학 교 명	부 설 학 교 명	위 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부 설 유 치 원	강 원 도
강원대학교	부 설 고 등 학 교	강 원 도
경북대학교	부 설 초 등 학 교 부 설 중 학 교 부 설 고 등 학 교	대 구 광 역 시
경상국립대학교	부 설 중 학 교 부 설 고 등 학 교	경 상 남 도
국립공주대학교	부 설 유 치 원 부 설 중 학 교 부 설 고 등 학 교	충 청 남 도
부산대학교	부 설 고 등 학 교	부 산 광 역 시
전남대학교	부 설 중 학 교 부 설 고 등 학 교	광 주 광 역 시
전북대학교	부 설 고 등 학 교	전 라 북 도
제주대학교	부 설 초 등 학 교 부 설 중 학 교 부 설 고 등 학 교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충북대학교	부 설 중 학 교 부 설 고 등 학 교	충 청 북 도
공주교육대학교	부 설 초 등 학 교	충 청 남 도
광주교육대학교	광 주 부 설 초 등 학 교 목 포 부 설 초 등 학 교	광 주 광 역 시 전 라 남 도
대구교육대학교	대 구 부 설 초 등 학 교 안 동 부 설 초 등 학 교	대 구 광 역 시 경 상 북 도
부산교육대학교	부 설 초 등 학 교	부 산 광 역 시
서울교육대학교	부 설 초 등 학 교	서 울 특 별 시
경인교육대학교	부 설 초 등 학 교	인 천 광 역 시
전주교육대학교	전 주 부 설 초 등 학 교 군 산 부 설 초 등 학 교	전 라 북 도
진주교육대학교	부 설 초 등 학 교	경 상 남 도
청주교육대학교	부 설 초 등 학 교	충 청 북 도
춘천교육대학교	부 설 초 등 학 교	강 원 도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6] <개정 2022. 11. 8.>

대학의 부속시설등과 사무국 및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제9조제3항 관련)

학교명	과 · 담당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10
강원대학교	15
경북대학교	15
경상국립대학교	14
국립공주대학교	11
국립군산대학교	10
국립금오공과대학교	3
국립목포대학교	9
국립목포해양대학교	1
국립부경대학교	11
부산대학교	1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9
국립순천대학교	10
국립안동대학교	10
전남대학교	16
전북대학교	11
제주대학교	11
국립창원대학교	10
충남대학교	12
충북대학교	11
한경국립대학교	7
국립한국교통대학교	10
한국체육대학교	2
국립한국해양대학교	10
국립한밭대학교	7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범위(제9조제5항 관련)

학교명	행정실	학교명	행정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5	국립순천대학교	4
강원대학교	12	국립안동대학교	4
경북대학교	12	전남대학교	13
경상국립대학교	12	전북대학교	10
국립공주대학교	7	제주대학교	8
국립군산대학교	4	국립창원대학교	5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충남대학교	10
국립목포대학교	4	충북대학교	8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2
국립부경대학교	6	국립한국교통대학교	5
부산대학교	12	한국체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국립한국해양대학교	4
		국립한밭대학교	3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	
연 락 처	(044) 203 - 6919